

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

의안 번호	5-350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6. .
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시험실시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 규정(안 제2조)

나. 민간인 위원의 여비지급 근거 규정(안 제3조)

동두천시 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당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.

1. 시험문제의 출제·심사·선정·편집·편찬·채점에 종사하는 사람
2.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
3. 시험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
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총 무 과
입 안 자	실 . 과장 직위 . 성명	총무과장 홍 현 섭
	담당 . 팀장 직위 . 성명	시정담당 손 덕 환
	담 당 자 성명 . 전화	방 숙 경 860-2123